

의안번호	제631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7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31

제출연월일 : 2024년 7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·합리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청년 위원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8조)
 - 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규정 신설(안 제8조제2항~제3항)
 -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
 - 청년위원 의무 위촉 조항 신설(안 제8조제8항)
 - 「청년기본법」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,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0% 의무 위촉하되,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 제외 또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경우 청년위원 30% 이상 위촉
 - 지역인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위촉 규정 신설(안 제8조제9항)
 -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 신설(안 제8조제10항)
- 위원회 운영현황 도 홈페이지 공개 조항 신설(안 제18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청년”이란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2항) 본문 중 “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”을 “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미리 선정인원, 자격요건, 선정기준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.

1.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응모자가 없는 경우

2. 긴급한 안전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전을 처리한 후 해

산되는 경우

3.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⑧ 도지사는 위원회(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)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된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⑨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⑩ 도지사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2항제2호 중 “통·폐합”을 “통폐합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“(위원회 운영 등 보고)”를“(위원회 운영 등 보고 및 공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청년”이란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</u></p>
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미리 선정인원, 자격요건, 선정기준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응모자가 없는 경우</u></p> <p>2. <u>긴급한 안전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⑤ (생 략)

⑥ (생 략)

제16조(위원회 활동 점검 등) ① (생 략)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2. 위원회의 통·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
3. ~ 5. (생 략)

제18조(위원회 운영 등 보고) (생 략)

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⑨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⑩ 도지사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⑪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16조(위원회 활동 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통폐합 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위원회 운영 등 보고 및 공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
<신 설>

과 같음)

②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양성평등기본법

-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

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□ 청년기본법

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위원회(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청년기본법 시행령

제20조(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)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·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 <개정 2023. 9. 12.>

1.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
2. 외교·국방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
3. 인사·감사·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
4.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·성격·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
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정위원회
2.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
3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
4.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

가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

나. 시·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

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신설 2023. 9. 12.>

1.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: 10분의 3 이상
2.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: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·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
3. 그 밖의 위원회: 10분의 1 이상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현행조례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·합리성 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정선미